

기술지원단 운영규정

2009년 2월 26일 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시행세칙 제 26조에 의거 설치되는 소음진동기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직무) 본 위원회는 국내외 소음진동 기술 지원을 위한 다음 사항들을 수행한다.

- (1) 산업체의 소음·진동 관련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원
- (2) 소음·진동 관련 정부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
- (3) 산업체 및 정부기관의 소음·진동 관련 인력 양성 지원
- (4) 기타 국내외 소음진동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

제 3 조 (구성) 본 지원단은 단장 1인, 간사 1인,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으며,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4 조 (임기) 본 지원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조 (소집) 본 지원단의 단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 6 조 (의결) 본 지원단의 의결은 재적 단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기술지원단 운영지침

1. 기술 수요처 발굴

- 학회 홈페이지,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단을 적극 홍보한다.
- 학회 회원사 등에 전자우편을 보내 기술지원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.
- 학회의 1인 1사 제도를 활용하여 회원사의 기술수요를 파악한다.
- 기술 수요처는 기술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통보한다.[양식 1]
- 관학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부로부터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.
- 산학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수립한다.

2. 전문가 발굴

- 학회 사무국에 접수된 기술지원 요청서는 기술지원단으로 송부하여 신속히 전문가를 발굴 한다.
- 전문가 발굴이 기술지원단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학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전문가 발굴은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과 실적을 우선한다.

3. 전문가 활동

- 지정된 전문가는 빠른 시일 내 기술수요처와 협의하여 현장을 방문, 소요 기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.

- 전문가는 문제해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.
- 전문가는 현장 방문 내용을 현장방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지원단에 보고한다.
- 현장방문 보고서 접수 후 기술지원단은 해당 전문가에게 1차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.
- *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전까지의 경비

4. 문제 해결

- 기술지원단은 전문가가 작성한 현장방문 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.
- 기술지원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도출 조속히 해결토록 한다.
- 기술지원단은 책임전문가를 선정하고 책임전문가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.
- 기술지원 소요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, 기술수요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책임전문가는 진행상황을 기술지원단에 적정 시점에서 진행보고서를 작성, 보고한다.
- 진행 보고서 접수 후 기술지원단은 약정 경비를 책임전문가에게 지급한다.
- * 계약금액의 약 85%
- 문제해결이 완료된 후, 책임전문가는 완료 보고서를 작성, 기술지원단에 보고한다.

5. 기술지원 활성화 방안

- 진행 및 종료된 기술지원 과제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.
- 일정 시점에서 기술수요처와 기술지원단이 모일 수 있는 workshop를 개최한다.
- 학회 회원 대상으로 기술지원 전문가 파일을 작성한다.
- 문제가 전산해석 혹은 측정을 요하는 경우 당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업체 및 대학, 연구소를 추천할 수 있도록 파일을 작성·보관한다.